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88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 민형배·주철현·소병훈

문정복 • 박지원 • 송옥주

이개호 • 정동영 • 김문수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강간·추행죄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의 제작·배포를 적시에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역시 컴퓨 터 활용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의 견이 있습니다.

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 「형법」에 규정된 사기의 죄를 추가하고 자 합니다. 국제적 규범·수사절차에 부합하는 범죄 수사여건 개선으 로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 니다(안 제5조제1항). 법률 제 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의2의 이수범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11 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 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	第5條(犯罪捜査를 위한 通信制限
措置의 許可要件) ① 통신제한	措置의 許可要件) ①
조치는 다음 各號의 犯罪를 計	
劃 또는 實行하고 있거나 實行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犯罪의 實行을 저지하거나	
犯人의 逮捕 또는 증거의 蒐集	
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許可	
할 수 있다.	
1. 刑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1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	
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	
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	
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	
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 · 제172조 내지 제173 조 · 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 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 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 조의 예비 · 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 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 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 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 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 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 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 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 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 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 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 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 • 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 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 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 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 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 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 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 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 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 다), 제352조(제350조, 제350 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2. ~ 12. (생 략) <신 설>

-1] O 40 -7 -1] O 40
<u>제347</u> 조, 제 <u>347</u>
ス 0 1 250ス
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frac{1}{2}$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
<u>* 1000 = 12 0 1</u>
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4
7조, 제347조의2, 제350조, 제
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
- 3)
<u>다)</u>
9 - 19 (처체코 가 0)
2. ~ 12. (현행과 같음)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10. 10 0 - 단기 0 표 또 개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 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